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124-34	게재일	2018.12.30. 06:17
제 목	'SKY캐슬' 김정난 외 학생도 자살, 김서형 과거사 '섬뜩' [결정적장면]		
U R L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812300611111710&search=title&searchstring=자살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뉴스엔의 해당 기사는 드라마 'sKY' 관련 내용을 다루었는데, 제목에 '자살'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자살'을 사용하지 않고도 제목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자살'은 불가피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p> <p>2.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해, 명시적으로 자살행위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용어와 행위 묘사 등을 자제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윤리강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도 준용하고 있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란 용어를 쓰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다.</p> <p>3. 위 기사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자살보도의 신중)과 시행세칙 제18조(자살과 관련한 보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위반했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 (자살보도의 신중)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8조 (자살과 관련한 보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p>2019년 1월 24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위 원 김용 박종수 이성규 심재웅 황용석</p>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124-35	게재일	2019.01.04. 06:01
제 목	‘마이웨이’ 한지일 “미국서 우울증 앓고 여러번 자살 생각”[어제TV]		
U R L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901040134141610&search=title&searchstring=%C0%DA%BB%EC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뉴스엔의 해당 기사는 70년대 영화배우 한지일의 미국 생활을 다루었는데, 제목에 ‘자살’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자살’을 사용하지 않고도 제목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자살’은 불가피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p> <p>2.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해, 명시적으로 자살행위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용어와 행위 묘사 등을 자제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윤리강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도 준용하고 있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란 용어를 쓰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다.</p> <p>3. 위 기사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자살보도의 신중)과 시행세칙 제18조(자살과 관련한 보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위반했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 (자살보도의 신중)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8조 (자살과 관련한 보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p>2019년 1월 24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위 원 김용 박종수 이성규 심재웅 황용석</p>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124-36	게재일	2019.01.03. 17:55
제 목	나경원, 신재민 전 사무관 자살시도에 여권 질타		
U R L	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23520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시사캐스트의 해당 기사는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다루었는데, 제목에 ‘자살’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자살’을 사용하지 않고도 제목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자살’은 불가피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p> <p>2.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해, 명시적으로 자살행위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용어와 행위 묘사 등을 자제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윤리강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도 준용하고 있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란 용어를 쓰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다.</p> <p>3. 위 기사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자살보도의 신중)과 시행세칙 제18조(자살과 관련한 보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위반했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 (자살보도의 신중)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8조 (자살과 관련한 보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p>2019년 1월 24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위 원 김용 박종수 이성규 심재웅 황용석</p>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124-37	게재일	2019.01.04. 15:39
제 목	쓰촨성 관료, 회의 중 상관들에 총격 후 자살		
U R L	http://www.chinajingji.co.kr/2017/01/04/%ec%93%b0%ec%b4%a8%ec%84%b1-%ea%b4%80%eb%a3%8c-%ed%9a%8c%ec%9d%98-%ec%a4%91-%ec%83%81%ea%b4%80%eb%93%a4%ec%97%90-%ec%b4%9d%ea%b2%a9-%ed%9b%84-%ec%9e%90%ec%82%b4/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중국경제의 해당 기사는 쓰촨성 지방 정부 관련의 사망 사건을 다루었는데, 제목에 ‘자살’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자살’을 사용하지 않고도 제목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자살’은 불가피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p> <p>2.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해, 명시적으로 자살행위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용어와 행위 묘사 등을 자제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윤리강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도 준용하고 있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란 용어를 쓰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다.</p> <p>3. 위 기사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자살보도의 신중)과 시행세칙 제18조(자살과 관련한 보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위반했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 (자살보도의 신중)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8조 (자살과 관련한 보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p>2019년 1월 24일</p> <p>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p> <p>위원장 이강혁 위 원 김용 박종수 이성규 심재웅 황용석</p>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124-38	게재일	2019.01.13. 18:30 (캡처 시각)
제 목	공무원 자살 부른 소통교육		
U R L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97926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수원일보는 홈페이지 우측에 ‘공무원 자살부른 소통교육’이라는 제목과 함께 관련 기사 목록을 나열했다. 기사는 2015년 9월 30일에 작성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3년 지난 사건을 최근의 이슈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게다가 기사는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으로 보도 자체를 삼가야 하는 자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다 특히 ‘자살’ 용어를 제목에 내세워 부적절한 배치라고 본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공무원 자살 부른 소통교육 [전문] 자살한 故 유○○ 공무원 아내 편지</p> <hr/> <p>[단독] 인권의 탈을 쓴 영태명 號 알고보니...</p> <hr/> <p>수원시 소통교육 부당지적 직원 해임 '위법'</p> </div> <p>2.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자살 보도에 관해 보도 자체의 자제를, 불가피하게 다뤄야 할 경우 그 내용을 최소화하도록 윤리강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도 준용하고 있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란 용어를 쓰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다.</p> <p>3. 위 기사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자살보도의 신중)과 시행세칙 제18조(자살과 관련한 보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위반했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2항 (자살보도의 신중)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8조 (자살과 관련한 보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p>2019년 1월 24일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위 원 김용 박종수 이성규 심재웅 황용석</p>			